

## 2026년 경산시 푸드테크 상용화모델 개발 및 실증사업 수혜기업 추가모집 공고

경상북도와 경산시,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외식 및 푸드테크 기업, 식품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, 푸드테크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「2026년 경산시 푸드테크 상용화 모델 개발 및 실증사업」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07월 27일  
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

### 1. 사업개요

- ☐ **신청기간:** 2026년 07월 27일(월)~ 07월 31일(금)
- ☐ **사업기간:** 2026년 8월~11월
  - \* 10월 말까지 사업수행을 진행하여, 11월 내 최종평가 및 결과보고를 기준으로 잔금 집행예정
- ☐ **지원규모:** 컨소시엄 당 최대 75백만 원(총 1개 컨소시엄 선정)
  - \* 총 사업비(지원금+자부담)의 **20% 이상 기업 자부담 필수**
- ☐ **지원내용**
  - 외식 및 식품 제조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기반 상용화 모델 개발 및 실증
  - 푸드테크기업 기술선도형 또는 지역식품산업 수요기반형 분야
- ☐ **신청방법:** 이메일 접수(jin940123@gepa.kr)
- ☐ **선정방법:** 평가점수 고득점 기업 순 선정
- ☐ **문의:**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ESG·기업지원팀
  - 전화: 054-470-8562
  - 이메일: jin940123@gepa.kr

## 2. 추진절차



※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변경 될 수 있음

## 3.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
- ☐ **지원분야:** 외식 및 식품제조기업 현장 내 경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이 있어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 과제

| 구분              |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푸드테크기업<br>기술선도형 | 푸드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추진과제 제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역식품산업<br>수요기반형 | 지역외식 및 식품제조 기업 수요조사에 따른 분야와 품목 사전<br>지정 후 푸드테크 기업이 개선방안 제안 |

- \* 예시: 스마트·AI 기반 경영 및 제조혁신 시스템, 식자재 관리 솔루션, 조리용 주방로봇, 제조 및 포장 관련 기술적용 등
- \* 지역외식업 수요기반형은 사전 수요조사 후 지정과제 선정 예정

□ **지원대상:**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하고 있는 외식 및 식품제조 기업과 푸드테크 기업 간 컨소시엄

- (컨소시엄 구성) 주관 기관을 중심으로 참여 기관을 추가하여 구성  
- (주관 기관) 푸드테크 기업 / (참여 기관) 경산 소재 외식 및 식품제조 업체
- 컨소시엄의 형태는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, 주관 기관(푸드테크 기업)과 참여 기관(식품기업 및 외식기업) 각 개 기관 참여 필수  
(예시: 1:1, N:1, 1:N, N:N )

〈 컨소시엄 체계 〉

| 예시①     |                   | 예시②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주관 기관   | 참여 기관             | 주관 기관   | 참여 기관             | 참여 기관*       |
| 푸드테크 기업 | 식품기업 및 외식업체 (수요처) | 푸드테크 기업 | 식품기업 및 외식업체 (수요처) | 기업 또는 협·단체 등 |

\* 기타 기업/기관, 연구기관, 대학 등 필요 시 참여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가능하며, 컨소시엄 내 식품기업 및 외식업체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

- 경산시 이외의 타 시·군에 소재한 주관 기관(푸드테크 기업)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, 사업 기간 내(최종 평가일까지) 경산에 연구소 또는 지사 등의 설립이나 이전에 대한 약속서를 제출하여야 함
- 참여 기관(식품기업 및 외식업체)은 반드시 경산시 소재의 업체이어야 하고, 3년 이상 영업실적을 보유하여야 함.

\*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가 경산시이어야 함

- 단, 3년 미만의 외식업체인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, 선정심의위원회(정성평가)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함. (예외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, 신청서 내 '예외 인정 요청서\*(자유양식)'를 별도 첨부하여 제출할 것. 심의 결과에 따라 참여 불가 처리될 수 있음)
  - 해당 기술에 대한 사업화 계획 및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
  - 창업 이후 매출, 고객 수요 등 일정 수준 이상 실적을 보유한 경우

\* 예외 인정 요청서(자유양식)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

- 기술 도입 배경 및 식품기업 및 외식업체의 적용 계획
- 창업 이후 매출 또는 고객 성과 지표(근거자료 포함)
- 식품기업 및 외식업체의 지속가능성 또는 기술 적용 여건 등

□ **지원내용** 식품기업 현장 솔루션 기반 상용화 모델 개발 이후, 현장 맞춤 모델 실증 및 데이터 분석하는 사업(1~2단계) 진행

| (1단계)<br>과제발굴 및 상용화모델 개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2단계)<br>실증 및 데이터분석, 최적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식품기업 요구사항 발굴 및 현장 분석</li> <li>- 협력과제 기획</li> <li>- 솔루션 기반 상용화모델 개발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장 맞춤형 상용화 모델 실증 테스트</li> <li>- 효과성 및 경제성 등 데이터 분석</li> </ul> |

**1단계** 식품기업 현장분석 및 솔루션 기반 상용화모델 개발

- (지원내용) 상용화 기술개발, 제품개발, 연구개발 비용
- (결과물) 상용화모델 설계(안), 실증 시나리오 및 효과성 검증 계획(안), 시제품, 특허출원 등

**2단계** 식품기업 현장 솔루션 기반 상용화모델 실증 및 데이터분석

- (지원내용) 식품기업 맞춤형 모델 실증 및 데이터 검증, 최적화 비용
- (결과물) 상용화모델 실증 결과보고서, 효과성·경제성 분석 결과 보고서, 최적화 푸드테크 시스템(완성품) 등

□ **지원규모**

- 지원금: **75백만원**
- 20% 기업 자부담은 필수이며, 자부담 금액 지정된 계좌로 입금 확인 시 지원금 교부

\* 예시) 지원금:자부담=8:2이고, 지원금을 최대로 지원받는다면

(지원금) 75,000천원, (자부담) 18,750천원, (총 사업비) 93,750천원

- 지원금은 부가가치세(VAT)를 포함하지 않은 비용 기준으로 지원되며, 부가가치세는 주관 기관 또는 참여 기관이 전액 부담

□ 상세 지원항목

| 목           | 세목       | 과목해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01 인건비     | 01 보수    |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총사업비<br>(지원금과<br>자부담의 합)<br>40%<br>이내에서<br>산정 |
| 107 퇴직급여    | 퇴직급여     |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04 연금부담금 등 | 01 연금부담금 |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직원에 대한 4대 보험의 기관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1 일반운영비   | 01 사무관리비 | 1.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·장비의 임차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원금<br>총액의<br>15%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| 2. 기술도입비, 전문가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| 3. 사업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·설치·임차·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·네트워크의 이용료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| 4.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·설치·임차·사용대차 비용, 사무용품비 등의 소모성 비용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| 5. 문헌구입비, 논문 게재료, 인쇄·복사·인화비, 슬라이드 제작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| 6. 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·등록·유지에 필요한 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| 7. 사업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1 일반운영비   | 02 공공운영비 | 각종 세금 및 공과금, 우편요금, 택배비, 수수료, 공공요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1 일반운영비   | 03 행사운영비 | 1. 회의장 임차료, 숙기로,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·세미나 개최 비용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| 2. 사업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행사프로그램 개최 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1 일반운영비   | 14. 회의비  |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회의 시에 개최 장소에서 다과, 식사 제공 등을 포함하여 회의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2 여비      | 01 국내여비  | 사업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7 연구개발비   | 03 시험연구비 | 1. 시약·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| 2. 시험제품·시험설비 제작(자체제작과 외부제조를 모두 포함한다)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14 수선유지교체비 | 05 수선유지비 | 1. 시설·장비 운영·유지·보수비,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| 2.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: 사업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4. 신청방법

### □ 신청 · 접수

- 접수기간: 2026. 07. 27.(월)~ 07 31.(금) 18:00 제출분에 한하여 유효
- 신청서 교부 및 안내: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대표 홈페이지 (<https://www.gepa.kr/>) 사업공고 참조
- 접수방법: 이메일 접수(jin940123@gepa.kr)
  - 주관 기관 또는 참여 기관이 다수일 경우, 각 항목별 제출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거나, 압축하여 업로드
  - 접수문의: 054-470-8562(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ESG · 기업지원팀)

### □ 제출서류

| 구분    | 제출서류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공통 필수 | 사업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| 시스템 내 정보 입력           |
|       | 컨소시엄 구성현황                  | 별지 1호 (엑셀양식)          |
|       | 사업계획서                      | 별지 2호                 |
|       | 성실이행확약서                    | 별지 3호                 |
|       | 컨소시엄 참여자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| 별지 4호                 |
|       |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            | 주관 기관 참여 기관 각 1부      |
| 주관 기관 | 공고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2025년 결산재무제표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경산시 사업연계 확약서               | 별지 5호 (해당기업만 제출)      |
| 참여 기관 |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예외 인정 요청서                  | 외식기업 업력 3년 미만인 경우만 제출 |

## 5. 선정절차

### □ 선정방법

- 신청서 접수기업 정량평가(30점), 정성평가(70점) 합산점수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1개사 선정 및 예비합격기업 선정(합산점수 60점 미만시 지원 제외)

\* 미달 시, 추가 모집 공고 후 평가점수(서류) 고득점 순 선정

#### ○ 서류심사(정량심사)

- 업체 평가 기준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정 예정기업의 3배수 선정

| 구분    | 항목    | 배점  | 비고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주관 기관 | 매출액   | 10점 |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기준 |
|       | 재무건전성 | 5점  | 부채비율 기준 (재무제표)     |
|       | 기업규모  | 5점  |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기준   |
| 참여 기관 | 매출액   | 5점  | 과세표준증명원 등 제출자료 기준  |
|       | 업력    | 5점  |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      |

\* 주관 기관 또는 참여 기관이 복수인 경우 각 항목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

\*\* 단, 참여기관에 대한 평가항목은 참여 기관 내 식품기업 및 외식업체를 평가대상으로 함

#### ○ 정성평가(선정심의위원회)

-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 개최
- 프레젠테이션 발표평가를 통해 1개 컨소시엄 선정

| 항목           | 배점  | 주요 평가 요소 예시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업목표의 명확성    | 10점 | 문제정의 및 목표 설정의 타당성          |
| 수행역량 및 조직 구성 | 10점 | 컨소시엄 구성, 전문성, 역할 배분 적정성    |
| 기술개발 내용      | 15점 | 기술 차별성, 독창성, 구현 가능성        |
| 사업화 가능성      | 10점 | 사업화 전략, 확장성, 지속성           |
| 실증 계획의 구체성   | 15점 | 실증 환경, 측정지표, 운영계획의 명확성     |
| 예산의 적정성      | 5점  | 예산 배분의 타당성, 자부담 구조 등       |
| 지역경제 기여도     | 5점  | 고용창출, 기술 확산, 지역 내 유통 가능성 등 |

### □ 선정 결과 안내

-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([www.gepa.kr](http://www.gepa.kr))에 공고

## 6. 지원금 지급 및 사용기준

### □ 지원금 지급

- 본 사업은 경산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며,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의 보조금 집행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
- 지원금은 협약 체결 이후, 선금 신청 시 자부담이 입금된 내역을 함께 증빙하여야 지급될 수 있음

### □ 지원금 사용 기준

- 본 사업의 자부담금(총사업비의 20% 이상)은 주관기관(푸드테크 기업)이 원칙적으로 부담하여야 함. 단, 참여기관(식품기업 및 외식업체)이 일부 금액을 분담하는 것은 가능하나, 자부담 금액을 전액 부담해서는 안 됨. 자부담 구조는 협약 체결 시 컨소시엄 간 협의하여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, 식품기업의 100% 자부담 분담 구조는 사업 목적상 인정되지 아니 함.
- 자부담을 주관 기관과 참여 기관이 각각 부담하는 경우는 각각의 기관 명의의 신규 통장에 자부담액을 입금하여야 하며, 지원금 계좌는 주관 기관 명의의 통장을 신규로 발급받고 자부담과 지원금을 각각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
- 지원금 및 자부담금은 각각의 계좌와 연계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
- 지원금은 부가가치세(VAT)를 포함하지 않으며, 부가가치세는 주관 기관 또는 참여 기관이 부담하여야 함
-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(지원금+자부담)의 40% 이내에서 산정 가능함
- 기술 도입비, 전문가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금 총액의 15% 이내에서 산정 가능하며, 그 외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함

## □ 지원금 정산

- 지원완료(10월 말) 후 15일 이내 관련 지침에 따라 결과보고와 잔금신청을 하여야 하고, 잔금의 지급은 최종평가와 결과보고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

## 7. 기타 유의사항

### □ 제외대상

- 기업의 부도
-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중소기업 또는 대표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지원하는 경우
-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### □ 유의사항

- 경산시 이외의 타 시·군에 소재한 주관 기관(푸드테크 기업)이 협약서를 제출하고 사업체 참여하였으나, 최종 평가(11월)까지 이전(移轉)에 대한 증빙(지사 또는 연구소 주소가 명기된 사업자 등록증, 지점 등록 포함된 사업자등록현황 증명 등)이 불가할 경우 선금지급분이 환수 될 수 있음
- 본 사업은 지역 내 식품기업 및 자영 외식업체의 기술 도입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,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. 단, 지역 독립 운영성과 사업효과가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음
- 참여희망 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 내용이 허위이거나 중복 신청, 참여 제한 대상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,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지원신청서 제출 시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

-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, 증빙이 되지 않는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
- 적격 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계획을 보류하거나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, 불성실한 사업 진행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본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,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
- 사업 참여 기업 선정(심사)위원회 구성, 선정결과(점수 포함), 합격 또는 탈락 사유 등 심사와 관련한 일체의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([www.gepa.kr](http://www.gepa.kr))에 공고 예정

## 8. 사후관리

### ☐ 기기 유지·보수

- 실증을 위해 설치된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이 ‘하자보수’ 등의 유지관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,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응 가능한 고객지원 연락체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함

### ☐ 사업장 유지 및 변경사항 통지

- 참여기관(식품기업 및 외식업체)은 사업장 유지, 기술 활용 상태 등에 대한 주기적 확인 및 변경사항 발생 시 경제진흥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

### ☐ 지원금 환수조건

- 실증을 위해 장비를 지원받은 식품기업 및 외식업체(참여기관)는 2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폐업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 환수 또는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
  - 단, 천재지변, 사업 양도, 지위 승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
-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, 즉시 선정 취소 및 전액 환수 조치됨